

##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 운영 시설에서 장애인의 COVID-19 백신 접근성 관련 차별 금지

NYC 보건 및 정신위생부(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는 COVID-19 백신 접종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부서의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수행 시 이에 국한되지 않으나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재활법,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인권법을 비롯해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합니다.

대중의 일원은 뉴욕시 보건부의 COVID-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편의를 요구하려면 <https://vax4nyc.nyc.gov/patient/s/>를 방문하거나, [hubaccess@health.nyc.gov](mailto:hubaccess@health.nyc.gov) 로 이메일하거나 1-877-829-4692 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편의 요구가 있다면 자신이 선호하는 뉴욕의 시 운영 백신 접종소에 예약하기 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의 일원은 예약 없이 백신 접종소에 방문하여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접종소에는 장애인 편의 출입구, 화장실, 백신 접종 구역으로 가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접종소는 미식 수화(American Sign Language, ASL)를 비롯해 240 여개 언어로 제공되는 비디오 번역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접종소에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장애, 접근성, 기능적 필요(Disability, Access and Functional Needs, DAFN) 코디네이터가 최소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이동성 장치(예: 휠체어, 보행 보조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각 시설은 개인이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최소 한 대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동반자나 개인 간병 수행원, 개인 간병 도우미, 가족, 통역자, 방문 시 도움을 줄 기타 개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신 접종소에 서비스 동물의 출입이 허용됩니다. 여러 접종소에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편의가 마련되어 있으나, 누구든 방문 전에 [hubaccess@health.nyc.gov](mailto:hubaccess@health.nyc.gov) 로 이메일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311692 번으로 문자하여 다른 편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뉴욕시에서는 전혀 외출할 수 없는 자격이 되는 주민들께 자택에서 COVID-19 백신을 접종해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은 <https://forms.cityofnewyork.us/f/homebound> 에서 양식을 작성하거나 1-877-829-4692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 백신 예약 지원, 뉴욕시 보건부의 백신 접종소에 마련된 편의, 자택 백신 접종 옵션에 관한 추가 정보의 요구나 시의 COVID-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관한 기타 장애 관련 문의는 [hubaccess@health.nyc.gov](mailto:hubaccess@health.nyc.gov) 로 이메일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311692 번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부의 COVID-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참여를 시도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장애를 근거로 합리적인 편의를 거부당했거나 달리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hubaccess@health.nyc.gov](mailto:hubaccess@health.nyc.gov) 로 이메일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311692 번으로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만이나 고충 제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hubaccess@health.nyc.gov](mailto:hubaccess@health.nyc.gov) 로 이메일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311692 번으로 문자를 보내 불만이나 고충을 제기하시면 뉴욕시 보건부 담당자가 이(2) 영업일 이내에 연락을 드려 불만이나 고충이 접수됐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고충 제기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 명시되어 있습니다.

## ADA, 재활법, COVID-19 접근성 관련 주와 시의 인권법에 따른 뉴욕시 보건부의 고충 제기 절차

본 고충 제기 절차는 뉴욕시 보건부가 COVID-19 백신을 배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함에 있어 대중의 일원이 장애를 근거로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충을 제기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충 제기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고충 제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ADA, 재활법, 뉴욕주 인권법이나 뉴욕시 인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나 관련 불만에 해당하는 위치, 날짜, 설명 등 주장하는 차별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차별의 예로는 이에 국한되지 않으나 기관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뤄진 미식 수화 통역사, 큰 활자 또는 점자 문서, 컴퓨터 지원 실시간 표기(**computer-assisted real-time transcription, CART**)라고도 알려진 실시간 표기 서비스 요청을 거절한 경우, 뉴욕시 보건부의 COVID-19 백신 접종 시설에 마련된 장애인 접근성에 관해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 뉴욕시 보건부의 COVID-19 백신 접종소에 근무하는 직원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고충 관련 대면 인터뷰나 녹취 등 고충 제기를 위한 대체 수단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충 제기는 ADA 나 재활법,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인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육십(60) 역일 이내에 [hubaccess@health.nyc.gov](mailto:hubaccess@health.nyc.gov) 로 이메일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311692 번으로 문자를 보내 이뤄져야 합니다.

고충을 접수한 후 이(2) 역일 이내에 뉴욕시 보건부 담당자가 고충 제기자에게 고충이 접수됐음을 확인하는 전화를 드립니다.

뉴욕시 보건부 담당자가 고충 제기자에게 연락을 드린 후 오(5) 역일 이내에 제기된 고충에 대해 서면으로 대응하거나, 적절한 경우 요구한 합리적인 편의(들) 또는 합리적인



## Health

대체 편의(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처리를 해 드립니다. 합리적인 편의(들) 요구가 거부되는 경우,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뉴욕시 보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고충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고충 제기자 또는 해당인의 피지정인은 그런 대응 후 삼십(30) 역일 이내에 [OGC@health.nyc.gov](mailto:OGC@health.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장애인이 고충 관련 대면 인터뷰나 녹취 등 이의 제기를 위한 대체 수단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 제기에 대한 대응은 이의 제기자에게 접수 후 삼십(30) 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모든 대응은 서면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고충 제기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서면으로 제기되는 모든 고충과 이의, 고충과 관련한 대응은 최소 삼(3) 년간 보관됩니다.

본 문서는 요구 시 뉴욕시 보건부가 제공해 드리는 큰 활자, 녹취, 점자 등 대체 형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ADA, 재활법, COVID-19 접근성과 관련한 주와 시의 인권법에 따른 뉴욕시 보건부의 고지 권리

**효과적인 소통:** 뉴욕시 보건부는 요구 시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유자격 수화 통역사, 점자 문서, 언어나 청각, 시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소통 방식을 비롯해 뉴욕시 보건부의 COVID-19 백신 접종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방침과 절차 변경:** 뉴욕시 보건부는 장애인이 뉴욕시 보건부의 COVID-19 백신 접종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을 모두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동물을 동반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는 반려동물이 제한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뉴욕시 보건부의 백신 접종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보조적인 도움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뉴욕시 보건부의 COVID-19 백신 접종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방침이나 절차 변경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hubaccess@health.nyc.gov](mailto:hubaccess@health.nyc.gov) 로 이메일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ADA 는 뉴욕시 보건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조치 또는 뉴욕시 보건부에게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뉴욕시 보건부는 보조적인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선에서 방침을 변경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 예약 지원, 백신 접종소에 마련된 편의, 자택 백신 접종 옵션, 기타 장애 관련 COVID-19 백신 접종 문의와 관련한 질문이나 우려, 추가 정보 요구는 [hubaccess@health.nyc.gov](mailto:hubaccess@health.nyc.gov) 로 이메일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부의 COVID-19 백신 접종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보조적인 도움이나 서비스 또는 방침이나 절차의 합리적인 변경을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면 뉴욕시 보건부의 고충 제기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장애 관련 불만과 질문은 이에 국한되지 않으나 다음을 비롯한 기타 시, 주, 연방 기관으로하실 수 있습니다.

New York, NY 10272  
전화번호: 718-741-8400

<https://www1.nyc.gov/site/cchr/about/report-discrimination.page>

NYS Division of Human Rights  
One Fordham Plaza, Fourth Floor  
Bronx, NY 10458

전화번호: 718-722-3131

<https://dhr.ny.gov/contact-us>

US Department of Justice  
950 Pennsylvania Avenue, NW  
Civil Rights Division  
Disability Rights Section -1425 NYAV  
Washington, D.C. 20530

전화번호: 1-800-514-0301

[https://www.ada.gov/filing\\_complaint.htm](https://www.ada.gov/filing_complaint.htm)